

염동찬's Quant Espresso

양도소득세 도입: 기대와 우려와 실망



Quant
염동찬
02 3779 8918
dongchan@ebestsec.co.kr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공개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개하기로 한 금융시장 과세체계 전면 개편에 대한 청사진이 발표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지만, 손익 통산(손실상계), 이월공제(손실 이월) 등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 말 세법 개정안에서 반영될 예정이며, 투자자가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는 2022년과 2023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긍정적인 점 세 가지: 손익 통산, 손실 이월, 변동성 축소를 위한 방어장치

여러 자산간의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손익 통산과, 손실이 있을 경우 그 다음해 수익에서 손실액을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이월 공제는 긍정적입니다.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대규모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 취득시기(양도세가 산정되는 수익 계산 시작 시점)를 2022년말로 고정하고, 해외 주식 대비 국내 주식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기본 공제를 설정한 점 등입니다.

실망스러운 점 세 가지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는 계획이 함께 발표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들에게 이중 과세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나 지난해 발표했던 추진방향과 다르게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점 역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적절한 배분을 유도한다는 취지와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장기투자에 대한 추가 공제가 없다는 점 역시 기대와 달랐습니다.

손익 통산, 손실 이월 등으로 분산투자 효과를 늘리고 위험자산 확대를 유도한다는 점과,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완충장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운 요인이 존재하는만큼, 향후 절충안이 반영된 세법개정안이 어떻게 발표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과세 체계는 증권거래세인데, 이를 양도소득세의 일종인 금융투자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도소득세의 장점은 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더욱 부합하며, ② 여러 자산간의 손익 통산, 손실 이월 공제를 병행할 경우 분산 투자 효과를 증가시켜 위험자산 비중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투자자는 손실은 실현은 뒤로 미루고, 이익의 실현은 상대적으로 먼저 실행하는 비대칭성이 있는데, 손익 통산 및 손실 이월은 손실 실현에 대한 유인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자산 처분의 비대칭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결국 양도소득세의 도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려면 ① 손익이 합산되는 자산의 범위가 넓어야 하고, ② 손실의 이월 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이번 발표에서 손실 이월 기간은 3년으로, 손익 합산의 범위는 주식에서 펀드의 환매나 양도에 따른 이익(집합투자기구 이익),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대해서도 합산이 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비과세였던 채권 양도소득, ETF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 등도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어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표1 금융소득의 구분

구분	현행	2023년 적용
이자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국외 예금이자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보험차익 •파생결합 예금 이익(추가연계예금, 엔화스왑예금) 	(좌동)
배당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의제, 인정, 간주) •집합투자기구 이익(이자·배당 분배) •집합투자기구 이익(채권양도, 환매·양도) •파생결합증권 이익(ELB, DLB) •출자공동사업자의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좌동) •금융투자소득으로 개편 •배당소득→이자소득 •(좌동)
양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 양도소득(대주주 상장주식 등) •파생결합증권 이익(주가지수 ELW) •파생상품 소득(주가지수선물·옵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투자소득] •주식 양도소득(전면과세) •채권 양도소득 •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비과세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주식 양도소득(소액주주) •채권 양도소득 •집합투자기구 이익(상장주식·채권 양도) •주식형 ETF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ELS, DLS) 양도소득 •개별주기종목·금리·통화 파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기구 이익(상장주식·채권 양도) •집합투자기구 이익(환매·양도) •파생결합증권 이익(ELS, ETN, ELW) •파생상품 소득

자료: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기획재정부),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시행 방법과 주요 포인트

이번 개편안의 자본손익 통산 범위는 미국에 비해서는 좁고, 일본에 비해서는 넓은 편이다. 미국은 손익통산 상품 범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일본은 상장주식/채권/펀드를 한 그룹, 비상장주식을 한 그룹, 파생상품을 한 그룹으로 묶어 그룹 내에서만 이익을 통산하기 때문이다. 다만 차이가 존재한다면, 일본의 경우 채권의 이자소득이나 주식의 배당소득도 통산을 하지만, 한국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기준과 동일하게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2019년 3월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자본소득 통합과세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배당소득 통산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이월 공제는 일본과 동일한 3년을 적용했는데, 만약 손실이 발생한다면 손실 발생 이후 3년간은 그 손실을 모두 메우기 전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손실 발생에 따른 위험 부담을 국가가 일부 보조해준다는 의미이며, 이월 기간이 길수록 그 효과가 크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이월 공제 기간을 무제한으로 적용하고, 이탈리아는 5년, 일본 3년, 포르투갈 2년을 적용한다.

표2 미국·일본·한국의 금융투자상품 자본손익통산제도 비교

	미국	일본	한국(현행)
손익통산 상품범위 (포괄주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손익통산 - 금융투자상품 전체 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충적 손익통산 - 상장주식·채권·펀드(국외자산포함)/비상장주식/파생상품 구분 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적 손익통산 - 주식/파생상품/국외자산 구분 통산 - 개별 펀드는 다른 금융투자상품 또는 다른 펀드와 손익통산 불가
손익통산 소득범위 (이자·배당소득 통산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손익과 적격배당소득* 통산(조정순자본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주식·채권·펀드의 경우, 자본손익과 이자소득·배당소득 통산 - 비상장주식의 경우, 자본손익과 배당소득 통산 - 파생상품의 경우, 자본손익과 이자소득·배당소득 통산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손익과 이자소득/배당소득간 통산 불가 -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체계에서 제외
이월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단기 성격을 유지하며 다음 과세연도로 손실이월 공제 - 이월기간 무제한 - 1256계약(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과거 3년 손실소급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주식·채권·펀드/비상장주식/파생상품 구분 손실이월공제 - 향후 3년간 이월기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공제 불가
순자본이익에 대한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진세율(종합과세적 특성) - 장·단기소득 구분 - 단기소득은 일반소득세율 - 장기소득은 일반소득세율에 비해 낮은 누진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세율(분리과세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적 누진세율(분리과세적 특성) - 주식 양도소득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 세율 - 장·단기소득 구분 -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세율

주: *적격배당소득은 배당락일 ±60일(121일) 중 61일 이상을 보유한 미국기업/미국 상장 해외기업의 배당소득을 의미

자료: 미국 및 일본의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과세체계 분석 및 시사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현재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의 거래와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소액주주의 거래가 과세 대상이다. 대주주의 범위는 2020년 6월 기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혹은 KOSPI 1% 이상, KOSDAQ 2% 이상 지분을 보유)인데,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으로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된다.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2023년부터는 지분율이 아닌 연간 이익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된다. 보유지분의 평가액은 더 이상 과세 대상이나 세율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지 않고, 금융투자 소득이 3억원일 경우 20%, 3억원 이상일 경우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0.25%의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지 않고, 인하가 실시될 예정이다. 일부 비과세 상품들의 과세가 시작되는 2022년에는 증권거래세가 0.02%p 인하되고(0.25%→0.23%),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2023년부터는 0.08%p가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0.23%→0.15%).

표3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구분	부과요건	거래방식	과세여부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모든거래	과세
	대주주 이외	장내 거래	비과세
		장외 거래	과세
주권비상장법인	소·중견기업의 대주주 이외 소유 주식	K-OTC 시장 거래	비과세
	그 외 주식	모든 거래	과세
해외주식	모든주식	모든 거래	과세

자료: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주식거래행태 특성 분석 및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시사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4 금융투자소득 세율 구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
3억원 이상	6천만원(=3억원 X 20%) + (3억원 초과분 X 25%)

자료: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기획재정부),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가적으로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한 2가지 방안이 적용될 예정인데, ①의제 취득시기와 ② 국내주식 비과세 범위 확대이다.

의제 취득시기란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양도소득 과세를 피하기 위해 2022년말에 주식을 매도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2023년이 되어도 2022년 증가와 주식의 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이후 상승분을 이익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이 평가이익을 기록 중인 주식을 대규모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화시킨다.

국내주식 비과세 범위 확대는 현재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해외 주식의 비과세 범위가 1년에 250만원인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2023년부터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해외주식의 경우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을 묶어서 250만원 기본공제를 하는만큼, 해외주식의 비과세 범위는 감소했다.

이는 해외와 동일한 양도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해외 주식으로 자금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춰주는 요인이자,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감소시켜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은 전체 투자자(600만명)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30만명이 대상이 되지만, 전체 양도소득금액으로는 85%가 해당된다는 의미이다.

향후 추진 방향과 아쉬운 점

이번 개편안은 향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말에 발표 예정인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9월초에는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2022년 일부 적용을 앞두고, 2021년 상반기에는 금융회사의 원천징수 정산 시스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등 집행 시스템이 마련되고 하반기 세법개정안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입법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아쉬운 점은 3가지이다.

첫 번째는 이중과세 논란이다. 양도소득세가 증권거래세에 비해 더욱 선진화된 과세체계로 평가 받는 이유는 징수의 용이성 측면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리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원칙에 더욱 부합한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부과하는 국가가 있기는 하지만,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증권거래세의 폐지 계획을 함께 발표하지 못한 점은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손익을 합산하는 범위를 넓혀 분산투자 효과를 증가시키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적절한 분배를 이끌어야 하는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효과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배당성향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는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 저평가 원인으로 뽑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주주들이 배당금 증가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

세 번째는 장기 투자에 대한 추가 공제가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장기 자본이득과 단기 자본이득을 나누어 과세를 실시하고 일본은 장기투자에 대한 추가 공제가 없다. 장기 투자에 대한 추가 공제는 위험자산의 장기투자에 대한 유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인인데, 이번 개편안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세제 개편안은 내용과 상관없이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거래가 적고 수익률이 높을수록 불리하데, 손실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투자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상 반발은 당연히 심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예상되는 변동성 확대 요인을 완화시키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아직 도입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결국 분산투자 효과를 증가시켜 위험자산의 선호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엠통찬).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